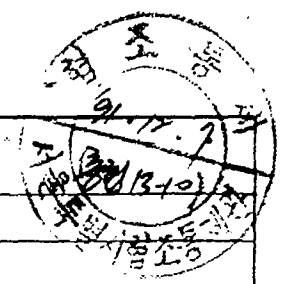


# 기안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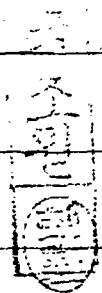
(전화: 731-6348)

시행상  
특별취급

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30310			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.	시	장		
수신처 보존기간		1845			
시행일자	91. 12.	1991. 12. 15			
보조기관	부서장 <b>전결</b> 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	협조 기관	법무담당관 <b>심사원</b> 협조특례	통제 부서장	
기안책임자	가로계획1계장 (신동문)			발	송
영수신 장 지	과안참조	발 신 명 의	시 장		
제 목	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	1991. 12. 15			
(제1안)	내부결재	24/15			
1. 도계30500-264('91.5.15) 및 도계30500-460('91.9.6)호와 관련 입니다.					
2. 도로국에서 요청한 강변북로(창릉천 - 반포대교)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변경결정 안건에 대하여 우리 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('91.11.14)에서 심의결과 우선 창릉천에서 생산대교 구간(6,740미터)에 대하여 의결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안과 같이 고시코자 하여,					
3. 잔여구간인 생산대교에서 반포대교간(11,863미터)은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심의키로 의결되었기에 심의후 조치코자 합니다.					

첨부 : 1) 고시(안) 1부.
2) 관련도서 1부. 끝.
(제2안)
수신 : 건설부장관
참조 : 도시계획국장
제목 : 동 건
1. 우리 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(제3안)
수신 : 총무처장관
참조 : 법무담당관
제목 : 관보 게재 의뢰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합니다.
가. 게재 구분 : 고시.
나. 게재 권명 :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변경결정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.
라. 게재 내용 : 별첨 고시문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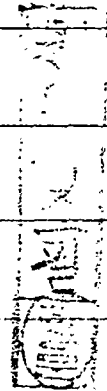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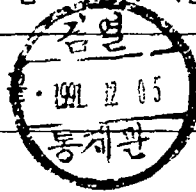
첨부 : 고서문 사본 2부. 끝.
(제4안)
수신 : 도로국장
참조 : 도로계획과장
제목 : 동 건
1. 도계30500-264('91.5.15) 및 도계30500-460('91.9.6)호와 관련임.
2. 귀국에서 결정요청한 도시계획시설(도로:강변북로)에 대하여 우리 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('91.11.14)에서 심의결과 우선 창릉천에서 성산대교 구간(6,740미터)에 대하여 의결되었기에 별첨과 같이 고서하였으니, 마포구청장이 경기도를 포함하여 지적고서 갈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라며,
3. 잔여구간인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(11,863미터)은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심의토록 의결되었으니 참고하고,
4. 사업시행전 치수과 의견(치수 30520-655, '91.10.2) 및 하천관리청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한강 유적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.
첨부 : 고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(제5안)
수신 : 마포구청장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<p>제목 :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통보 및 지적승인 이행저서</p>	
<p>1. 우리 시 구역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 및 변경</p>	
<p>결정 하고,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귀구에서는 <del>본청</del> <sup>준청</sup> (도로 계획과)과 협의하여 고양군 관내를</p>	
<p>포함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을 이행하기 바람.</p>	
<p>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</p>	
<p>(제6안)</p>	
<p>수신 : 수신처 참조</p>	<p>발신 : 과장</p>
<p>제목 : 동 권</p>	
<p>1. 우리 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해 별첨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</p>	
<p>하고 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	
<p>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</p>	
<p>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치수과장,</p>	
<p>(제7안)</p>	
<p>수신 : 고양군수</p>	
<p>참조 : 도시과장</p>	
<p>제목 :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변경결정 통보</p>	
<p>1. 서울시 시설 30310-491('91.9.20)호 및 고양군 도서 30312-16819</p>	
<p>('91.10.30)호와 관련입니다.</p>	

2. 우리 시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

및 변경결정 하고 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



고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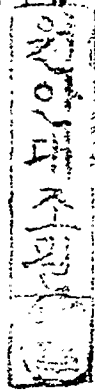
1991-  
서울특별시 고시 제341 호  
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 고시 내용과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  
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 도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 
경기도 고양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포입니다.

1991. 12. 5.

서울특별시장

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

번호	구분	종류	구분	번호	폭원(M)	사용 형태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비고
1	신설	도로	1	70	35 - 76	작동 차선 용도 로	도시 고속 도로	6,740	경기도 선도읍 연천리 763 (창릉천)	마포구 상암동 (상산대교)	경원부로 창릉천 - 상산대교 간 신설
2	개정	종로	1	138	20	일반 도로	보조 전선 도로	6,550	상암동	창릉천 (공로24)	경원부로 와 종로 부분 변경
	폐지	"	"	"	"	"	"	0	-	-	

인원도면 : 마포구청 및 고양군청 비치도면과 같음. 끝.